

#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(5급 상당)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(5급 상당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
2021. 4. 1.

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

##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근무지	직급	인원	기간	채용분야 및 직무내용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	지방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	1명	*만60세	의회 전문위원 (의안심사 및 의사진행 보좌)

\*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근무상한연령 도달 시까지

## 2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-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

## 3 응시자격

(기준일: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)

### 가. 공통요건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
-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##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나. 자격요건

### 자격요건(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)

1.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
2.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3.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4.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5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6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
7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
  - ※ 관련분야: 행정학과, 법학과 등 일반행정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
  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: 국가, 지방자치단체(출연·출자기관 포함), 공공단체,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지방의회, 지방행정, 지방자치분야 등 근무경력

## 4

## 보수 및 수당 등
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

## 5

## 시험일정 및 방법

## 가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2021. 4. 1. ~ 4. 12.	2021. 4. 13. ~ 4. 19.	서류전형	-	-	2021. 4. 21.
		면접시험	2021. 4. 29.	구의회(2층) 제2회의실	2021. 4. 30.

## 나. 시험방법

- 1차 시험: 서류전형
  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등 형식요건 심사
- 2차 시험: 면접시험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  - 인성, 공직관,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능력 등 적격성 심사

## 6

##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접수기간: 2021. 4. 13.(화) ~ 4. 19.(월), 09:00~18:00
- 접 수 처: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사무국 의정팀 채용담당자  
(우: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266)
- 접수방법: 방문 및 우편 접수
  - ※ 우편접수는 등기만 가능하며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
- 원서교부: 성동구의회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

## 가. 공통사항(필수제출)

### ○ 응시원서 1부 <첨부 1호>
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(3×4cm) 1매 별도제출
- 응시수수료: 10,000원(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)

※ 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

### ○ 이력서 1부 <첨부 2호>

-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)
-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(원본지참, 해당자에 한함)

### ○ 자기소개서 1부 <첨부 3호>

### 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 <첨부 4호>

### 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<첨부 5호>

### ○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 <첨부 6호>

-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제출
- 학과(학위)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(학위) 증명서 제출
- \* 응시요건 등을 위해 활용되며, 심사위원회에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

### ○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,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·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발행기관(단체)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(날인),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

- 경력(재직)증명서 발행기관(단체)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·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불인정

#### ○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
-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c.or.kr](http://www.nhic.or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-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

#### ○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) 1부

### 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#### ○ 관련분야 자격(면허)증 사본, 외국어능력, 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

- 자격(면허)증 유효기간: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
-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

#### ○ 관련학과 증명서 1부 <첨부 6호>

- 상기 관련분야와 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

### 다. 유의사항

-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(단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생서류는 가능),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,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
-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바람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
- 합격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
-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(서류전형결과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
  - ※ 재공고 시,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같음하므로 별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
-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성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의회사무국 의정팀(☎02-2286-64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